

| | |
|-----------|--------------------|
| 의안번호 | 제 169 호 |
| 의결 연월일 | 2019. . . (제 회) |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 |
|-------|-------------|
| 발의자 | 육미선 의원 등 8인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69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 의 자 :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박문희, 이상식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대상 규정 (안 제5조)

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내용 (안 제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31호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친화병원 지정 대상)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의 규정이고,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